

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경인지역 대학간의 학부학생 교류 및 학점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점교류 참여대학) 가천대(성남), 가톨릭대성심교정(부천), 강남대(용인), 경기대(수원), 경인교육대(인천), 경희대(용인), 단국대(용인), 대진대(포천), 루터대(용인), 명지대(용인), 서울신학대(부천), 서울장신대(경기광주), 성결대(안양), 수원대(화성), 아세아연합신학대(양평), 아주대(수원), 안양대(안양), 용인대(용인), 을지대(성남), 인천대(인천), 중앙대(안성), 평택대(평택), 한경대(안성), 한국외국어대(용인), 한국항공대(고양), 한세대(군포), 한신대(오산), 한양대(안산), 협성대(화성), 차의과대(포천) (총 30개 대학) (2018.2.27.개정)

제3조(실시구분) 정규학기 및 동·하계 계절학기로 한다.

제4조(실시시기 및 지원자신청) ① 계절학기 : 2001학년도 하계계절 학기부터 대학별 자체 일정에 따라 별도 실시한다. 단, 受 與 공히 본교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때 학점교류를 인정하고, 매학기 교내 신청학점 수와 별개로 신청한다.

② 정규학기 : 매 학기 사전 수강신청기간에 실시하고 매학기 교내 신청학점 수와 교류대학 신청학점수를 포함하여 18-21학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학점교류, 이수범위) ①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과목으로 한다.

② 학기 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의, 치, 한 약학 계열과 예, 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제6조(지원자격)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수강신청당시 지난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3.0(B)이상이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7조(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속대학(교)의 총장이 교류대학(교)의 총장에게 추천하면 교류대학(교)의 자체심사를 거쳐 교류대학(교) 총장이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8조(수강 및 의무)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하고,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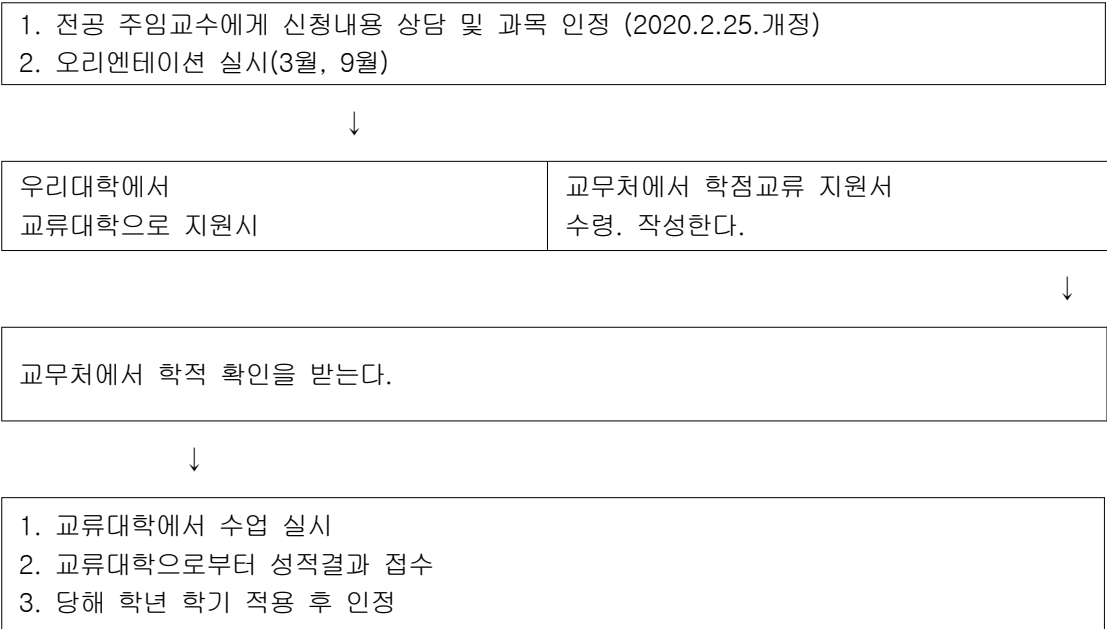
제9조(등록) 정규학기 등록은 교류대학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등록은 교류대학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다. 다만, 등록금액 및 납부방법은 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8.2.27.개정)

제10조(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인정하면 학적부에 기록한다.

4-1-4 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교양과목으로만 인정받는다. 단, 경인지역 대학(교) 학점교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수구분은 달라질 수 있다. (2018.2.27.개정)

제11조(지원절차)



제12조(협약서 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경인지역대학(교) 학부학점 교류협약서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